

자본시장 효율화 · 선진화 계기 마련

자통법 2009년 초 시행... 금융시장,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 새로운 첨단 금융투자상품 대거 등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크게 강화될 듯.



최상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samoch@mofe.go.k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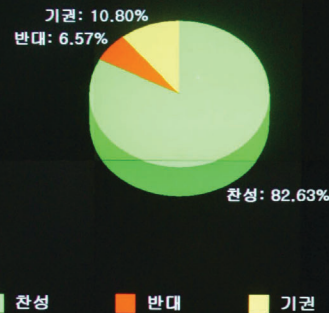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총 44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률이고 우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는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업(fund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금융회사간 칸막이 허문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한 금융법제 선진화 경쟁을 벌였다. 영국이 1986년 「자본시장통합법」(FSA)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금융 빅뱅을 일으킨 이후, 2001년에는 호주가 「금융통합법」(FSRA)을 제정하였다. 우리와 동북아 금융허브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2002년, 홍콩은 2003년 「자본시장통합법」(SFA)을 제정했



지난달 3일 자통법이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4인, 기권 23인의 찬성률 82.63%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고, 지난해에는 일본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호주·영국 등 선진 금융법제를 모델로 하여 2005년부터 자본시장 관련 법제의 내용과 틀을 원점에서 재설계하여 자통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자본시장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기본원칙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에서 생산·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예금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표〉 자본시장과 은행의 상대적 비중(2004년)

(단위 : %)

	한 국	미 국	영 국	호 주	캐나다	핀란드
은행신용/GDP	100.8	215.5	159.1	109.0	97.0	70.7
시가총액/GDP	63.1	139.4	132.6	121.8	120.4	98.8
시가총액/은행신용	62.5	64.7	83.3	111.8	124.1	139.8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영국 「금융시장법」(FSMA)의 파생결합증권(contract for differences) 개념과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금융투자상품 개발 경쟁을 촉발하여 상품개발 능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에서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동일한 금융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종합금융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신탁업의 6개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였고 각 금융투자업별로 고유한 금융업 규제를 마련하였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모든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고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고유한 상품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모든 투자자를 동일하게 취

급하던 그간의 금융법 체제에서 벗어나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각 투자자별로 수준이 다른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금융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대상별로 최적의 규제가 이루어져 체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능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거나 금융회사별로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 쏟아질 듯

셋째,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도입하였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새로운 첨단 금융투자상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명 의무제도, 적합성 원칙,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를 새

롭게 마련하였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본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투자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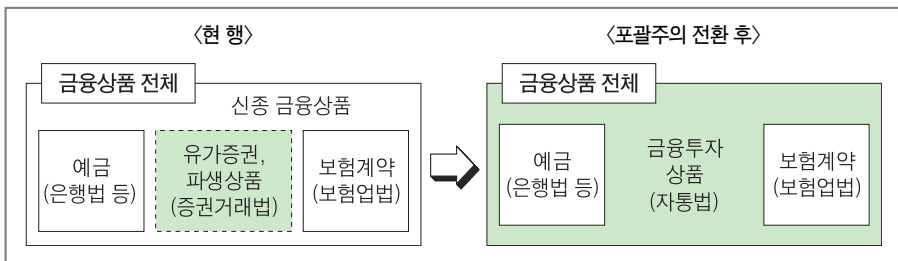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internal control system)를 회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특히 큰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편집자註: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과 증권사 간에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부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한 용어. 내부거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임)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투자자 손해의 사후 구제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넷째,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칸막이식 규율체제를 폐지하고,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계좌로부터 송금, 공과금 납부, ATM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해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선진 투자은행(IB)과 동등한 영업모델을 갖추어 경쟁할 수 있게 되고,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대형화·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초에 시행될 것이다. ■

〈그림 1〉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전후



〈그림 2〉 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